

영등포구의회
제174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오현숙의원 대표발의】



2013. 5. 1

運 營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96호로 2013년 4월 18일 오현숙 의원 외 4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영등포문화재단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영등포문화재단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여 신설함.

(안 제3조제2항제2호사목)

나.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」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 관리공단」으로 변경함.(안 제3조제2항제3호라목)

다. 문화재단의 예산안 및 결산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 기구 직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함.(안 제3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5. 검토의견

- 이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 개정사항으로
 - 안 제3조제2항2호 행정위원회의 소관에 문화재단을 추가함.
 - 안 제3조제3항에 문화재단의 예산안 및 결산 중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기구 직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회건설 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함.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등포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반영하고 우리구 의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법체계나 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